

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6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4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4. 0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4. 19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보건행정과장 이윤희)

가. 개정이유

-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 확대 및 제외 대상 추가(안 제2조)

1) 지원 대상 확대

- “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”

: 65세 이상 군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→ 65세 이상 군민

2) 지원 제외 대상 추가

- “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”

- 접종종류 삭제(안 제3조)

- 지원 횟수 포함 및 제목 개정(안 제4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1)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12조, 제16조
- 2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3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3조
- 4)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- 5)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8조

○ 예산조치: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계획

○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)
 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8127(2024. 2. 23.)호]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사회보장제도 협의
 - 해당사항 없음: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협의 제외 대상임

○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-1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2. 23. ~ 2024. 3. 14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지원대상 확대 및 제외대상 추가(안 제2조)

- 지원대상을 “65세 이상 군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”에서 “65세 이상 군민”으로 확대하고
- 「국적법」에 따른 외국인을 지원 제외대상에 추가하였음
- 접종종류 및 횟수 삭제, 지원금액 및 횟수 정비(안 제3조~제4조)
 -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삭제하고,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토록 정비하였음
- 조문정비(안 제5조)
 - 65세 이상 군민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불필요에 따른 조문정비

○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대상포진의 접종대상을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4. 1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